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1
----------	-----

2024.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위원회 대안으로 함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명칭과 위치[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추가 설치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4년 위탁운영비(141,645천원) 추경 편성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15. ~ 2024.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 금번 개정안은 조례의 별표상에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시설명과 주소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집행부는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보다 수월한 환경에서 어르신에게 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운영 계획을 집행하고 있음.(참고 자료 참조)
- 이에 2024년 준공 예정인 은곡·선정경로당의 명칭을 각각 은곡·선정시니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바뀐 주소명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표> 신규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 번	시설명	위 치	연 번	시설명	위 치
1	학리시니어센터	논현동 109-1번지	1	학리시니어센터	학동로 47길 30
2	삼성시니어센터	삼성동 100-8번지	2	삼성시니어센터	삼성동 100-8번지
			3	은곡시니어센터	세곡동 360-18번지
			4	선정시니어센터	역삼동 683-19번지

※ 참고자료

□ 신축 경로당 현황

구분	학리경로당	삼성경로당	은곡경로당	선정경로당	도곡1경로당	재너머경로당
위치	학동로47길 30	삼성동 100-8번지	세곡동 360-18번지	역삼동 683-19번지	역삼동 683-19번지	청담동 16-16번지
연면적 (㎡)	468.75 (▲310.44)	459.88 (▲287.17)	636.19 (▲538.69)	605.42 (▲434.82)	703.8 (▲572.9)	1,148 (▲856.9)
준공	2023. 8. 22.	2024. 6.	2024. 6.	2024. 12.	2024. 10.	2025. 12.
명칭	학리시니어센터	삼성시니어센터	은곡시니어센터	선정시니어센터	도곡1노인복지관 1)	재너머시니어센터
조례	2023.5.19 조례 제정	2023.5.19 조례 제정	2024년 4월 조례 개정	2024년 4월 조례 개정	2024년 10월 고시 예정	2025년
사진						

1) 노인복지관 정규직 7명 이상(사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물리치료사, 관리인 등)종사하며, 연면적 500㎡이상 (사무실, 조리실,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치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1개이상 갖추어야 함)

※ 도곡1노인복지관 준공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등) 의거 사회복지시설로 고시 예정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질 의 : 이번 회기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련 조례와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음. 두 조례가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조문의 개정인데 두 조례의 양식이 다름. 어떤 사유인가
- 답 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후,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확인함.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의 개정 방식이 바람직한 것에 동의. 조례 간 체계를 위해 이번 개정에 반영하여 개정에 동의
- 질 의 : 이번 회기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련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됨.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은곡, 선정, 도곡1경로당 3곳인데, 조례에는 도곡1경로당이 빠져 있음. 도곡1경로당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 아닌가
- 답 변 : 어르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니어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도곡1경로당은 노인복지관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관리됨. 그리하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음.

7. 토론 요지

- 반복적 조례 개정 우려를 없애고 조례 간의 체계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상정·안건 처리함

8. 심사 결과 : “위원회 대안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관련의안번호

제362호

발의일자 : 2024. 4. 24.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반복적 조례 개정 우려를 없애고 조례 간의 체계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조문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상정·안건 처리함

2. 대안의 주요내용

-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 관련 별표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수정함(안 제3조)
- 별표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4년 위탁운영비(141,645천원) 추경 편성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15. ~ 2024.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와 같다”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명칭 및 위치) 어르신복합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 표와 같다.</p>	<p>제3조(명칭 및 위치)</p> <p>-----</p> <p>-----</p> <p>----- <u>구청장이 정하여 고</u> <u>시한다.</u></p>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20px;"> <thead> <tr> <th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연 번</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시설명</th> <th style="width: 65%;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학리시니어센터</td> <td>논현동 109-1번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삼성시니어센터</td> <td>삼성동 100-8번지</td> </tr> </tbody> </table>	연 번	시설명	위 치	1	학리시니어센터	논현동 109-1번지	2	삼성시니어센터	삼성동 100-8번지	<p style="text-align: center;"><u>< 별표 삭제 ></u></p>
연 번	시설명	위 치								
1	학리시니어센터	논현동 109-1번지								
2	삼성시니어센터	삼성동 100-8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여가지원
2. 노인의 교육지원
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수행

제5조(이용대상)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
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
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
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은 관리·운영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